대한의사협회
KOREAN MEDICAL ASSOCIATION
"국민을 위한 바른 의료,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합니다"

우)04373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0 삼구빌딩 8F[http://www.kma.org]/전화 02-6350-6587/전송(02)790-8911
보험국 국장 김기성[6574] 보험급여팀장 백영기[6581] 팀원 장운형[6587] / E-mail: kma6350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13-664호
기안일자 2018. 4. 16.
수 신 각 시도의사회장, 각 학회장, 대한개원의협의회장, 각과개원의협의회장
참 조
제 목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(복지부 고시 2018-52호) 집행정지 안내(한올바이오파마, 한국팜비오)

1. 관련근거

가.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(복지부 고시 2018-52호, 2018. 3. 26.)

나. 2018아10842 집행정지 : 서울행정법원 제12부 결정(2018. 4. 13.), '한올바이오파마, 한국팜비오'

다. 보건복지부, 보험약제과-2561호(2018. 4. 16.)

2. 위 호 관련, 서울행정법원에서 2018. 3. 26.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'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52호)'의 [별지 2] '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변경' 중 붙임의 의약품에 관한 고시 집행을 다음과 같이 정지하였습니다.

3. 이에 보건복지부에서 붙임의 의약품이 4월 13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됨을 알려 온 바, 동 사항을 전달하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 바랍니다.

- 다 음 -

신 청 인	집행정지 품목	주 문
한올바이오파마 주식회사	74품목(붙임)	상기 품목의 효력을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
주식회사 한국팜비오	1품목(붙임)	

※ 기존(변경전) 상한금액 적용

※ 동 내용은 우리협회 홈페이지(www.kma.org) '상담실-무료보험상담실'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(대의협 813-664) (2018. 4. 16)

붙임 : 집행정지 대상 품목 1부. 끝.

대 한 의 사 협 회 장

"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"